

- ▶ 보도 일시: 2012.5.30.(수) 조간
<인터넷 5.29(화) 12:00 이후>
- ▶ 총 3 쪽

◆ 근로개선정책과 과장 양 성 필
사무관 이 창 주
☎ 02-2110-7399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감시적 근로자(경비원 등)에 대한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·적용으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

- 고용인원은 0.2명 감소(감소율 1.1%)하였으나 연평균 감소 추이('06년 ~ '10년 평균 감소율 1.9%) 보다 낮아
- 월 급여는 132만원으로 10만원 증가(증가율 8.4%)

□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감시·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%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면 대량 감원*이 예상되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의 90%이상을 지급하도록 지난해에 시행령을 개정**하였다.

* 최저임금의 100%이상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전체 경비원의 12.0%를 감원할 계획으로 조사됨(2011년 실태조사 결과)

** 감시·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추이: '07년 70% → '08~'11년 80% → '12~'14년 90% → '15년 100%

○ 시행령 개정 이후 감시적 근로자*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여부 등 주요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고용 변동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(3.12일~4.13일) 결과 감시적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고, 월 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* 감시적 근로자: 경비원, 수위, 물품감시원 등 감시적인 업무를 주로 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

□ 감시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934개소 사업장의 고용인원 및 월 급여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

- 2012. 2월말 기준 사업장의 평균 고용인원은 17.5명으로 2011. 12월말 대비 0.2명(감소율 1.1%)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크지 않으며, 대부분의 사업장(89.8%)에서 고용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또한, 감시적 근로자의 월 급여는 132만원으로 2011. 12월말 대비 10만원(증가율 8.4%) 증가하였고, 시간당 임금*은 4,374원으로 547원(증가율 14.3%) 증가하였다.

*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
(’11년 3,827원→’12년 4,374원)

- 시간당 임금 증가율(14.3%)이 ’12년 최저임금 인상효과(19.3%*)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는 이미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었던 사업장이 절반 가까이(449개, 48.6%)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

* ’11년 최저임금 3,456원(4,320원의 80%)→’12년 최저임금 4,122원(4,580원의 90%)

□ 한편, 점검은 감시·단속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등 99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

- 점검 사업장 993개소 중 840개소(위반율 84.5%)에서 법 위반 사항 2,297건을 적발하여 시정지시를 하였다.
- 주요 위반 내용은 ▲최저임금 지급 위반 84개소(8.5%) ▲임금 지급 위반* 305개소(30.7%) ▲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460건(46.3%)이며

* 전액지급 원칙, 정기지급 원칙 등 위반

- 특히, 임금·법정수당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장은 461개소(위반율 46.4%)로 체불액은 6억 1,800만원에 달하였다.

<금품유형별 체불내역>

구 분	계	법정수당 미지급	최저임금 미달	임금 미지급	퇴직금 미지급
인원 (명)	4,357	2,134	628	1,500	95
금액 (백만원)	618	218	183	118	99

* 법정수당 미지급: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, 야간근로수당, 유급휴일수당(근로자의 날) 등 미지급

-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감시·단속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08년~2011년 최저임금 80% 적용에서 단계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90%, 2015년부터 100% 적용하도록 한 것” 이라고 하면서
- “2012년 1월부터 2개월 동안의 모니터링 결과 감시적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고, 월 급여가 상승하는 등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
-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도 감시·단속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법정 근로조건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” 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이창주사무관(☎ 02-2110-7399)에게 연락주시기
바랍니다.